

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199
----------	------

2022년 6월 21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22년 5월 25일
- 다. 회부일 : 2022년 5월 27일
- 라. 상정일 :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
2022년 6월 15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이병한)

가. 제안이유

-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 이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상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조항의 위치 변동 사항을 반영함.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발생 요인 없음).
- 다. 입법예고(2022. 3. 17. ~ 2022. 4. 6.) 결과: 의견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-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지방세조합, 전문매각기관이 대행하는 예술품*의 공매·매각 사무와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한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“법”)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*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·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,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품(법 제103조의3제1항)

※ 법 개정 신규대조표 별첨(공매 관련 규정 정비사항 발취)

- 본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복잡하게 규정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집약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‘법’)으로 분법되면서 법의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총 7개 조항으로 2017년에 제정¹⁾된 것으로,

※ 지방세징수법 제정(시행 2017. 3. 28., 법률 제14476호, 2016. 12. 27., 제정)

- 본 개정조례안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 예술품의 공매·매각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(제6조 부터 제19조 까지, 14개 조문)은 지난 제284회 정례회에서의 의결(2018.11.21.)로 신설(2019.1.3. 전부개정, 시행)된 바 있음.

※ 「국세징수법」(제104조 등)의 경우에도 압류한 예술품 등의 경우 세무서장이 전문 매각기관에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1) 「지방세징수법」 입법 배경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징수·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,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〈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 등 관련 현행 본 조례 14개 조항 〉

조 항	내 용
§6 (전문매각기관의 선정)*	전문매각기관 및 대상기관의 선정
§7 (대상기관의 선정)	대상기관 신청서류 및 선정 시 시보·시 홈페이지 공고
§8 (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등)	1차 서류심사(업무소관 부서장), 2차 심사(위원회)
§9 (위원회 구성 및 회의)	위원장(재무국장), 위원 시 소속 과장급 6명으로 구성
§10 (대상기관 선정 취소)	부도, 파산 등 업무수행 곤란, 중대한 범죄행위 등
§11 (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)	필요한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평가 의뢰
§12 (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)	3회 이상 경매 실시 또는 1년 경과 미매각시 해제요청
§13 (매각재산의 인도)	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 시 매각재산 인도 및 인수증 수령
§14 (매각대금의 수령)	매각수수료 적정여부 확인 및 수수료 차감 금액 수령
§15 (매각대금의 배분 등)	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매각대금 배분 및 체납액 총당
§16 (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)	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청구
§17 (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)	과다한 체납처분비 예상,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등
§18 (비밀유지 등)	매각대행 시 알게 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
§19 (배상책임)	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발생 시 배상 의무 규정

* 본 개정조례안 대상 조문

- 현재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은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
- 압류재산 중 예술품(예술적·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)에 대한 매각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
- 본 법 개정 취지(이동 신설)는 현재 매각 절차마다 전문매각기관 등의 대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별도의 절(제11절의2)을 신설하여 한 곳에 모아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것으로,

-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법 및 법 시행령 조문의 이동*(삭제 및 신설)에 따른 개정 조문을 반영하여 인용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 · 법 제71조의2(전문매각기관의 매각 대행 등) 삭제 → 법 제103조의3(전문매각기관의 매각 대행 등) 신설(시행 2022.1.28., 법률 제18794호, 2022.1.28., 일부개정)

· 법 시행령 제74조의2(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) 삭제 → 법 시행령 제91조의11(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) 신설(시행 2022. 1. 28., 대통령령 제32372호, 2022. 1. 28., 일부개정)

○ 한편, 그동안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예술품(그림)을 압류 처분하여 이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 해오고 있으며 현재 압류 유지 중인 예술품은 28점임.

※ 체납자 개인별로 미술품 1점에서 최대 11점까지 압류 중이며, 체납 총액은 5,041백만원

- 최근 3년간 예술품 공매의뢰 내역을 보면 체납자 5명에 대하여 7점의 예술품을 공매의뢰 하여 위품 2건을 제외한 5점의 예술품의 공매처분을 통해 1억 1천 8백만원을 배당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한 바 있음.

< 최근 3년간 예술품 7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>

공매의뢰 미술품		매각 현황		매각 취소 내역		비고
체납자	공매 의뢰	매각 미술품	서울시 배당액	취소 미술품	취소 사유	
전○○ 외 4명	7점	5점	118백만원	2점	위품 확인	

※ 이중 5점은 매각되었으며, 2점은 위품으로 판정되어 공매의뢰가 반려

○ 다만, 재무국에서는 압류 동산의 적극적인 매각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 매각기관으로 주식회사 케이옥션과 업무협약서를 체결(2021.3.23.)하였으나,

-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아직까지 매각 실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바, 협약의 적극적 추진으로 효율적인 예술품 매각을 통하여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〈 (주)케이옥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비교 〉

구 분	(주)케이옥션	한국자산관리공사
주요 매각대상	예술품	부동산
매 각 수 수 료	협약가능	법정수수료*
물품 보관장소	제 공	미제공
기 타	미술품 등 압류 검토 지원(이미지)	-

* 별첨

〈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예술품 압류 내역 〉

연번	체납자 현황		담당자	압류일자	보관장소
	건수	체납액(원)			
1	9	105,603,640	이**	'04. 11. 6.	체납자
2	1	20,892,830	이**	'16. 3. 21	체납자
3	4	238,646,190	이**	'17. 11. 23.	체납자
4	7	51,863,570	이**	'21. 5. 24.	체납자 38금고
5	7	130,517,860	이**	'21. 5. 18.	체납자
6	1	98,992,610	은**	'21. 5. 20.	체납자
7	6	615,354,490	문**	'19. 11. 20.	체납자
8	1	25,890,970	김**	'21. 9. 8.	체납자
9	3	120,375,840	김**	'17. 11. 30.	체납자
10	11	3,633,710,410	강**	'21. 3. 3.	체납자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4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”을 “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”으로, 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”을 “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”를 “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전문매각기관의 선정) ① 시장은 압류한 재산이 <u>법 제71조의2제1항</u>에 따른 <u>예술품등</u>(이하 "예술품등"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<u>법 제71조의2제1항</u>에 따른 <u>전문매각기관</u>(이하 "전문매각기관"이라 한다)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관(이하 "대상기관"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공모절차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, 선정된 기관은 <u>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</u>에 해당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	<p>제6조(전문매각기관의 선정) ① - ----- <u>법 제103조의3제1항</u>에 따른 <u>예술품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03조의3제1항</u>에 따른 <u>전문매각기관</u>----- ----- ----- 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</u>----- 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